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등〉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96호)
- 이해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38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개요	1
--------------	---

【정춘생의원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해식의원안】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 . 검토의견	3
-----------------	---

1. 피해자의 범위에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포함(정춘생의원안) ..	3
2.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정춘생의원안, 이해식의원안)	10
3.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정춘생의원안)	16
4.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기한 연장(정춘생의원안)	23
5. 교육비·일상생활돌봄 지원 근거 신설(정춘생의원안)	26

I. 개요

【정춘생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2. 24.

(3) 회부연월일 : 2026. 2.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그런데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 구제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이해식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6. 26.

(3) 회부연월일 : 2026.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6월 17일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II. 검토의견

1. 피해자의 범위에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포함(정춘생의원안)

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중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 ----- ----- -----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u>공무원은 제외한다</u>)	1) ----- ----- ----- ----- <u>공무원을 포함한다</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희생자의 유가족과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10·29이태원 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음¹⁾).

정의에 따르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는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이 포함되나, 위에 해당하더라도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됨.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 당시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수는 약 3,100여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1,400여명은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심리상담을 받거나, 휴직·병가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당시 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서울시	용산구	보건소
참여인원	3,109	1,162	1,100	15	17	800	15
피해인원*	1,420	1,125	278	※통계 부존재	※통계 부존재	17	※통계 부존재

(자료 : 행정안전부) ※ 위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취합

* 피해인원 : 참여인원 중 심리상담, 휴직, 병가 등 조치를 받았거나 행한 인원을 의미

개정안은 이러한 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 결정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 등을 목적²⁾으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음³⁾.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중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사망하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에서 공무원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지원, 심리상담 등의 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경찰청과 소방청의 사례를 보면, 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경우에는 각 기관은 예산사업으로 ‘경찰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업’,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트라우마·직무소진 등 스트레스 예방 및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경찰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주요내용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생명지킴이 교육		▶ 쏘 직원 대상 직장교육			
	▶ 스트레스 관리 전문 과정		▶ 시도청 교육센터 마음돌봄과정			
	▶ 자가진단 활성화		▶ MAHPI(경찰맞춤형 정신건강척도) 등			
	▶ 긴급심리지원(응급처치)		▶ 충격사건 시 트라우마 조기 예방			
	▶ 지정상담(건강검진 차원)		▶ 1:1 스트레스 검사·결과 상담			
	▶ 경찰 마음동행센터(18개소) ※ '26년 6개소 신설 예정		▶ ONE-STOP 심리검사·상담·진료 ▶ 자살위기 등 고위험군 집중 지원·관리			
	▶ 민간 심리상담소(1,480개소)		▶ 일반 심리상담(전문검사·치료×) ▶ 고위험군 발견 시 마음동행센터 연계			
	▶ 협약병원(111개소)		▶ 정신과 전문의 진료			
	▶ 집중 치유프로그램		▶ 심리검사·개인상담·체험형 프로그램			
예산현황	* 계속사업 (201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액	3,934	4,464	4,464	4,690	6,065
사업성과	집행액	3,876	4,286	4,463	4,669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인원(명)	18,047	23,272	25,660	22,280	22,262
	횟수(회)	37,096	40,501	49,823	48,433	50,029

(자료 : 경찰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주요내용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찾아가는 상담실(2015년~)		▶ 외부 전문상담 기관을 선정하여 심리상담사가 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마음건강 교육 등 지원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2012년~)		▶ 대형재난 출동대원, 외상사건 노출 경험이 있는 직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해 심신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2012년~)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예산현황	① 찾아가는 상담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액	2,087	2,408	2,408	3,014	6,204
	집행액	2,087	2,408	2,388	2,999	-
②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액	690	690	690	690	940
	집행액	690	690	690	687	-
	③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예산액	520	560	560	560	672
	집행액	556 (+36 전용)	560	551	517	-
사업성과	① 찾아가는 상담실 : 상담건수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53,374건	63,416건	70,759건	79,453건	105,950건	
	②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참여인원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753명	2,741명	2,605명	2,531명	2,348명	
	③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 지원건수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7,454건	7,932건	8,034건	7,635건	7,725건	

(자료 : 소방청)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을 현행법상 피해자의 정의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관련 참사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보완이나 기존 예산사업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구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직무로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참사 관련 특별법 등에 유사 입법례가 없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조사위원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급여 및 지원과 현행 법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중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나, 피해자로 인정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심리상담 등 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 질환 등의 검사·치료의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정춘생의원안, 이해식의원안)

개정안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①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정춘생의원안 제9조제1항)하거나 활동기한을 2027년 9월 16일로 법률에 직접 규정 하여 연장하려는 것임(이해식의원안 제9조제1항).

현 행	정춘생의원안	이해식의원안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 ----- ----- -----2 년----- -----.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 ----- ----- -----202 7년 9월 16일까지 활 동을 완료하여야 한 다. <단서 삭제>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 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② (현행과 같음)	② -----제1 항에도----- ----- ----- -----

현 행	정춘생의원안	이해식의원안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u>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u>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 <u>활동기간을</u> <u>3개월</u> ----- -----.

조사위원회가 처음으로 현행법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⁴⁾을 행한 날짜는 2025년 6월 17일로 현행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2026년 6월 16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2025년 12월 23일 조사위원회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조사활동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결정통지까지 약 2개월이 별도로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정된 기간 내에 모든 조사를 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 의결하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6년 9월 16일로 변경됨⁵⁾.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수행하는 조사(신청 사건)와 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직권사건)로 구분되는데,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개시가 결정된 신청사건은 171건, 직권사건은 158건임.

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5) 조사위원회 보도자료(25.12.23.), [이태원특조위, 조사 활동기간 3개월 연장]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현황]

(단위 : 건)

구 분	조사개시 결정 후 진행 중		종결	
	신청	직권	신청	직권
	166 (병합 20건)	157	5 (각하2, 취하3)	1
	323		6	

(자료 : 조사위원회) ※ 2026. 6.30. 기준

그런데, 현재 조사가 종결된 건수는 신청사건 5건, 직권사건 1건으로 총 6건에 불과하고 그 외 사건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대다수의 조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이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 사건 대비 종결 사건 비율이 낮은 이유가 동 위원회의 활동 목적이 단순한 개별 민원 처리나 단편적인 위법성 판단이 아닌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고, 거시적·구조적 조사 결과가 확정되어야 개별 신청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가능하며, 조사 마무리 및 종합보고서 작성·심의 단계 진입 시 종결 사건 비율은 일시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함.

개정안은 법률에 규정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10·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이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사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사례, 조사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 내지 원인조사 등을 주된 활동 목적으로 한 위원회 중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해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 주요 사례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있음.

[근거 법률 개정을 통한 활동기간 연장의 주요 사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법적 근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활동 목적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진상규명 ■ 연장 방식 및 기간 : ‘한 차례에 한하여’ 1년 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2회에 한하여’ 1년 간 연장으로 개정 ■ 연장 사유 : 5·18민주화운동의 지역적 범위 확대,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 확장, 조사대상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등 진상규명 항목 추가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의 양과 질이 당초 입법 당시의 계산보다 더 긴 조사기간을 요하게 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법적 근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활동 목적 :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 ■ 연장 방식 및 기간 :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부터 3년 (기존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보다는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으로 활동 계속) ■ 연장 사유 : 1기 위원회가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 해산하였으나, 신청기간의 제한, 조사기간의 부족 등으로 진실규명완료율이 저조하고, 후속조치가 미흡하며, 조사범위의 한계로 인하여 법에 규정되었던 외 다른 유형의 국가폭력사건을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제2기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법률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법적 근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활동 목적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
- 연장 방식 및 기간 : 법 개정으로 활동종료일(2022.6.10.)을 명시하여 1년 6개월 연장
- 연장 사유 : 4·16 세월호 참사의 규모와 사안에 중대성에 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짧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 책임자들의 공소시효가 도과할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법적 근거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현재는 폐지된 법률
- 활동 목적 : 군사망사고에 관한 조사
- 연장 방식 및 기간 : 부칙 개정으로 사무국에 관한 규정을 3개월 연장
- 연장 사유 : 전환복무한 경비교도 · 전투경찰순경의 의문사를 “군사망사고”에 포함하고, 법에 정한 사고 또는 사건의 유형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법이 정했던 활동 기간 이후에도 발생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진상규명조사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에 따라 2020년 5월 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재설정

(자료 : 행정안전부, 조사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위 사례들에서는 조사기간의 필요, 새로운 조사대상의 발생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다양한 연장 사유가 나타났는데, 조사위원회의 경우에도 위 사례들과 같이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조사위원회는 현재 청문회와 조사활동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핵심 과제를 본격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필수 과제⁶⁾를 완수하기 위하여 조사활동 기간 1년 연장(‘27.9.16.까지)이

6) ① 핵심 국가 책임 구조 심화 조사 및 2차 청문회를 통한 공개 검증 ② 희생자·피해자 사건 결과보고서 작성, 이의신청 검토 및 보완조사 ③ 재난·안전 제도개선 권고사항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④ 종합보고서·백서 작성 및 정책권고 완성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청문회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진상규명 주요 성과	■ 단일 기관이나 개별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대비·대응·사후조치 전반에 걸친 구조적 실패의 결과임을 확인 ■ 긴급 위험 신고 접수와 전파, 재난 상황 인지, 현장 지휘 및 구조 활동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 확인 ■ 희생자 관련 정보 관리와 제공 과정의 문제, 희생자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와 설명 부족, 공적 추모 과정에서의 한계 등 확인
진상규명 한계	■ 청문회는 조사와 검증의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로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은폐·왜곡 의혹이나 책임 소재에 대한 최종 판단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
향후 과제	■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쟁점과 미해결 과제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조사 필요 ■ 재난 예방·대응 체계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협업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권고 구체화 필요

(자료 : 조사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3.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정춘생의원안)

개정안은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56조의2 신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 ----- ----- ----- ----- ----- ----- -----보상금 및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u>지원금</u>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⁷⁾.	② ----- -----<u>보상금등</u>----- ----- -----. ----- ----- ----- ----- -----.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u>지원금</u>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 -----<u>보상금</u> <u>등의 지급여부 및 금액</u>-----. ----- ----- ----- ----- -----.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u>지원금액</u>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 ----- ----- ----- -----. ----- ----- -----<u>보상금등의 금액</u>----- -----.
⑤ . ⑥ (생략) <u><신설></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보상금) ① 국가는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가 이 법에 따른 <u>생활지원금등</u>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u>보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가 이 법에 따른 <u>생활지원금등</u>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 ----- <u>보상금등</u>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가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⁸⁾하고 있으면서도 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7) 개정안의 제안일자(2026. 2.24.) 당시 시행 법률(법률 제21065호)

※참고 : **현행 법률(2026. 2.10. 개정, 2026. 5.11. 시행, 법률 제21334호)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0427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0.>

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목적의 금원으로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⁹⁾.

실제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국가의 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배상 및 보상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¹⁰⁾.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명시된 피해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현실화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 및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관련 법률안”)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보상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에서는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의

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행정안전부가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3.20. 기준 10·29이태원참사 관련 진행 중인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희생자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6건이며, 모두 1심이 진행 중임.

보상 또는 국가의 시책적 성격의 보상 등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의 법적 성격 및 지급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과 유사하게 참사에 대한 피해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4·16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면서, 손해배상 및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에 대한 사항은 손실 보상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음.

[보상 관련 참고 유사 입법례]

구 분	보상성격	보상대상	보상기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손실 보상* *(제7조제1항) 어업인 등 사람이 입은 손실 보상	(제7조제1항)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자 ·어업활동 제한 피해자 ·어구손실 피해자 ·수산물 판매감소 등 진도군 거주자 ·유류오염 등 피해 어업인	(제7조제3항) 세월호참사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책적 보상* *(제5조제1항)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사망부상에 대한 보상	(제5조제1항)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	(제5조제1항) 산출금액*+이자 *당시 월급여, 장래취업가능기간 등 기준 (제16조) 중복지급 금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책적 보상* *(제1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에 대한 보상	(제12조)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순직자 유족 등	(제12조1항) 중복지급 금지 (제12조제4항)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

(자료 : 행정안전부)

또한, 관련 법률안의 경우에도 배상금, 손실 보상 및 위로지원금을 각각 규정하면서 손실 보상의 경우 그 대상을 모든 피해자가 아닌 구조 및 수습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을 입은 사람 등 일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책적 성격이 아닌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보임.

[관련 법률안의 배·보상 관련 주요 내용]

용해인의원안 (의안번호 : 2212326)	
■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 배·보상 업무 전문가 포함	
■ 배상금의 범위 및 위로지원금, 손실보상의 대상 규정 신설	
■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의 지급 신청, 지급결정, 임시지급 및 정산 등 세부절차 신설	
권철승의원안 (의안번호 : 2212928)	
■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에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 배상금의 범위 및 위로지원금, 손실보상의 대상 규정	
■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의 지급 신청, 지급결정, 임시지급 및 정산 등 세부절차 신설	

[관련 법률안의 배상금의 범위, 위로지원금 지급대상, 손실보상 대상]

구 분	용해인의원안	권철승의원안
배상금의 범위	1)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위 1)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좌 등
위로지원금 지급대상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u>심의위원회</u> 에서 정함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u>조사위원회</u> 에서 정함
손실보상 대상	1)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사람	좌 등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보상금의 성격을 시책적 성격으로 볼 것인지,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관련 법률안들에서 정하고 있는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체계 및 내용을 고려하여 함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보상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보상금 관련 다른 입법례에서 보상내용, 대상, 기준 등을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안, 권칠승의원안)은 손실의 보상, 손해배상금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기한 연장 (정춘생의원안)

개정안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u>1년</u> 이내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¹¹⁾ .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 ----- ----- <u>3년</u>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11) 개정안의 제안일자(2026. 2.24.) 당시 시행 법률(법률 제21065호)

※참고 : **현행 법률(2026. 2.10. 개정, 2026. 5.11. 시행, 법률 제21334호)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4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0.>

1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치유�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2025년 25명, 2026년 11명(7월말 기준)으로, 치유�휴직은 참사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치유�휴직 신청 및 고용유지비용 집행 현황(2026. 7월말 기준)]

연도	치유�휴직 신청자	휴직자 수	고용유지비용 집행 현황
2024	-	-	-
2025	25명	25명	312백만원
2026.7.	11명	11명	37백만원

(자료 :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다만, 개정안의 제안일자(2026. 2.24.) 이후인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2026. 2.10. 개정) 중에 있는 현행법이 이미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한 바 있음.

[치유�휴직 신청기한 비교]

개정안 발의 당시 시행 법률 (법률 제21065호)	개정안	현행법 (26. 2.10. 개정, 26. 5.11. 시행) (법률 제21334호)
법 시행 후 1년 이내	법 시행 후 3년 이내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
2025. 5.20. 까지 신청 가능	2027. 5.20. 까지 신청 가능	2027. 9.16. 까지 신청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제안 당시의 시행 법률(법률 제21065호)과 비교하면 치유�휴직의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나, 현재 시행 중인 법률(법률 제21334호)과 비교했을 때는 치유�휴직의 신청기한을 오히려 단축하는 내용으로 보임.

개정안이 제안 당시의 시행 법률과 대비해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개정안보다 더 연장된 신청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도 법 시행 후 1년에서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어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입장임.

5. 교육비·일상생활돌봄 지원 근거 신설(정춘생의원안)

개정안은 국가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일상생활돌봄 지원을 하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1조의2(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신설>	제61조의3(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u>가사활동 지원 서비스</u>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u>식사 지원 서비스</u>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u>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u>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피해자 지원 관련 규정]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지원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정한 피해자 지원의 원칙은 국가등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볼 때, 교육비 지원과 일상생활 돌봄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자 지원의 원칙¹³⁾을 구체화한 제도를 현행법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국가등의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이라 함)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과 같이 교육비 지원과 일상생활 돌봄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2025년에 2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억 1,600만원의 지원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13)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4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의 교육비 지원 및 일상생활 돌봄 지원 규정

제16조(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제18조(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2·29여객기참사지원법」의 교육비 지원 및 일상생활 돌봄 지원 현황¹⁴⁾

구 분	지원대상 수	집행예산
교육비 지원	22명(대학생)	116백만원
일상생활돌봄 지원	- (신청 없음)	-

(자료 : 행정안전부)

다만, 개정안에서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교육비 지원(안 제61조의2)의 대상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인 교육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상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규정¹⁵⁾과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14) 동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33-34페이지 참고

15)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지원 대상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실제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12·29여객기참사 지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도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은 대학생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바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으로 구분되는데¹⁶⁾, 교육부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12·29여객기참사에서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지원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희생자의 유가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교육비 지원 실적(2025년 기준)]

구분	영유아	초중고	대학생
지원대상	24명	51명	22명
지원금액	(무상보육·교육)		116백만원('25.1, 2학기)
지원기간			8학기(희생자 자녀)

(자료 : 행정안전부)

한편, 개정안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2000년 이후 출생한 피해자의 수는 총 106명이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중 2000년 이후 출생자 현황]

계 (①+②)	①유가족	②인정 피해자			
		소계	긴급구조	사업장, 근로자	신체·정신적 피해
106	53	53	9	1	43

(자료 : 행정안전부)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육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의견 및 잠재적인 지원 대상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상생활돌봄 지원(안 제61조의3)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12.29여객기참사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일상생활돌봄

지원에 관하여 개정안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일상생활돌봄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2026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피해자 중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제공할 가족 등이 부재한 청·중장년(13~64세) 및 돌봄대상 가족이 피해자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으로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다른 피해자 지원 규정과 달리 해당 규정은 일상생활 돌봄 지원의 유형만 열거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일상생활돌봄 지원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는 피해자에 대한 일상생활돌봄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참고

교육비·일상생활돌봄 관련 여객기참사 사례

※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제공

1 교육비 지원

□ 사업개요

○ (근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 ▶ 어린이집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안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 유 치 원 : 국립, 공립, 사립 [「유아교육법」 제7조]
- ▶ 초·중·고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 대 학 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 (지원대상)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지원기간) 미취학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종료시까지, 초·중·고교졸업시까지, 대학교 8학기(희생자의 자녀) 또는 4학기(희생자의 자녀 외 피해자)

□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미취학	피해자(공통)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	어린이집, 유치원 필요 경비 중 보호자 부담 경비
초·중·고교	피해자(공통)	참사 당시 재학생 및 추후 입학 예정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대학교*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	참사 당시 재학생 및 추후 입학 예정자	최대 8학기 범위 내 등록금
	희생자 자녀 외 피해자	참사 당시 재학생 및 '25~'28년도 입학생	최대 4학기 범위 내 등록금

* (지원제외) 교내장학금 등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후 등록금 범위 내 전액 지원

□ 신청방법 및 절차

구분	신청절차	신청방법	접수 및 문의처
미취학	수시 신청* → 지원 * 신청은 지자체 및 유·초·중·고교에 신청 가능(개별문의 필요)	■ (신청방법) 관할 지자체·교육청에 수시 신청 ■ (필요서류) 신청서 및 피해자확인서, 피해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 서류 등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시·군·구), 유치원 관할 시·도교육청
초·중·고교	수시 신청* → 지원 * 신청은 지자체 및 유·초·중·고교에 신청 가능(개별문의 필요)	■ (신청방법)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청 ■ (필요서류) 피해자 확인서	관할 시·도교육청
대학교	신청(학기별 지정접수기간중) →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대학기) ■ (필요서류) 대학교육비 지급신청서 및 피해자확인서 등	한국장학재단 (☎1599-2000, kosaf.go.kr)

□ 사업개요

- (근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지원대상) 피해자 중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제공할 가족 등이 부재한 청·중장년¹⁾(13~64세) 및 가족돌봄청년²⁾(39세 이하)
 - * 1) 주돌봄자(가족 등)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2) 돌봄 대상 가족이 피해자일 경우
 - * 다만,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경우 사군구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를 거쳐 65세 이상 이용자 선정 가능(26년 한시) [2026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 (지원기간) 기본 1년(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최대 3년)

□ 지원내용 ※ 일상돌봄 전국 표준모델 기준, 특화서비스는 지자체별 일부 상이

- (기본서비스) 가사, 돌봄, 동행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휴식지원, 교류증진 등

구분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이용시간	이용요금(월)	이용개수	이용요금(월)
돌봄+가사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684,000원	1개 이용	식사지원(월8회)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	1,368,000원	-	228,000원
가사만	B형(가사형)	월 24시간	444,000원	2개 이용	/식사지원(월8회)
특화만	D형(특화형)	-	-	2개 이용	+영양관리(수시) 260,000원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 본인부담이 있으며,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의 경우 사·군·구 심의기구를 통한 심의를 거쳐 본인부담 인하 가능(26년 한시) → 기초·차상위 수준(기본 서비스 면제, 특화서비스 5% 부담(ex. 식사지원(월8회) 이용시 월 11,400원))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전화, 우편, 팩스 가능)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이용절차) 신청자 사전문의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 대상자 상담·심사 및 선정 → 지자체 이용권(바우처) 발급 → 신청자 제공기관 확인 및 이용
- (필요서류) ①신청자 신분증 ②신청유형별 필요 서류(피해자 확인서, 재직 증명서 등), ③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